국가유산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(김윤덕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0754

발의연월일: 2025. 6. 12.

발 의 자:김윤덕·이원택·박희승

양문석 • 조계원 • 윤준병

조인철 • 이춘석 • 홍기원

박수현 의원(10인)

제안이유

국가유산산업은 문화산업의 대표적 분야로서 국가 및 지역발전의 신성장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산업계에서도 국가유산산업 육성을 통한 국가유산산업 연구개발, 개발된 기술의 산업적 활용에 대한 기대 가 크고 국가유산산업의 육성은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 및 국격 제고 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.

하지만,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여 국가유산산업의 육성 및 지원이 활성화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.

이에 국가유산산업의 육성·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발전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의 국가유산 보호 및 향유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이 법을 제정하려는 것임.

주요내용

- 가. 이 법은 국가유산산업의 육성·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발전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의 국가유산 보호 및 향유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(안 제1조).
- 나. 국가유산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가유산산업의 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·시행하도록 함(안 제5조).
- 다. 국가유산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의 수립·시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청장이 관련 통계를 작성·관리하고 국가유산산업 정보체계를 구축·운영하도록 함(안 제6조 및 제7조).
- 라. 국가유산산업의 기술 개발 및 발전을 위하여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여 그 성과가 민간으로 이전되어 활용이 촉진되도록 하고,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(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).
- 마. 국가유산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창업 및 유통의 지원, 전문인력의 양성, 국가유산의 산업적 활용을 위한 기준 마련,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).
- 바. 국가유산산업에 기반을 둔 지식재산의 창출·보호·활용 촉진 및 그 기반 조성을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노력할 의무를 부여함(안 제17조).

국가유산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

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이 법은 국가유산산업의 육성·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발전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의 국가유산 보호 및 향유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- 1. "국가유산"이란 「국가유산기본법」 제3조제1호에 따른 국가유산을 말한다.
- 2. "국가유산산업"이란 국가유산의 가치를 보존하고 활용하는 활동을 통하여 경제적 또는 사회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재화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.
- 3. "국가유산디지털콘텐츠"란 국가유산 보존·관리 및 활용의 효용을 높이기 위하여 국가유산 기록 및 지식·정보·기술 등을 이용한 창작물로서 「문화산업진흥 기본법」 제2조제5호에 따른 디지털콘텐츠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멀티미디어콘텐츠를 말한다.
- 4. "공공기관"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.

- 가. 국가기관
- 나. 지방자치단체
- 다.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
- 라.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른 지방공기업
- 마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
- 제3조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 산산업의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 여야 한다.
- 제4조(다른 법률과의 관계) 국가유산산업의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 하는 바에 따른다.

제2장 국가유산산업 기반 조성

- 제5조(국가유산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·시행 등)
 ① 국가유산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가유산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(이하 "기본계획"이라 한다)을 5년마다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 -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 - 1. 국가유산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정책의 기본 방향
 - 2. 국가유산산업의 분야별 육성 및 지원 정책

- 3. 제7조에 따른 국가유산산업 정보체계의 구축・운영에 관한 사항
- 4. 제10조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
- 5. 제14조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
- 6. 그 밖에 국가유산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- ③ 국가유산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「문화유산 보존 및활용에 관한 법률」 제6조에 따른 문화유산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하여야 한다.
- ④ 국가유산청장은 기본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(이하 "시행계획"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- ⑤ 그 밖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6조(국가유산산업 관련 통계의 작성 등) ① 국가유산청장은 국가유 산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효과적으로 수립·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국가유산산업 관련 통계를 작성하고 관리할 수 있다.
 -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통계를 작성·관리하기 위하여 공 공기관의 장 또는 국가유산산업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에게 필 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자료의 제공 을 요청받은 공공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를 제 공하여야 한다.
 - ③ 제1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은 「통계법」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

- 여 작성하되, 통계 작성 대상 및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7조(국가유산산업 정보체계의 구축) ① 국가유산청장은 국가유산산업 업 관련 정보 및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수집·관리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산업 정보체계(이하 "정보체계"라 한다)를 구축·운영하여야하다.
 - ② 정보체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 - 1. 국내외 국가유산산업의 현황에 관한 사항
 - 2. 국가유산산업사업자의 수주(受注) 실적에 관한 사항
 - 3. 국가유산산업 관련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
 - 4. 국가유산 전문인력의 현황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
 - 5. 그 밖에 국가유산산업에 관한 정보제공에 필요한 사항
 - ③ 국가유산청장은 정보체계를 구축하는 경우 「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」 제22조의9에 따른 문화유산지능정보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.
 -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보체계의 구축·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8조(국가유산산업 특수분류체계 수립) ① 국가유산청장은 국가유산 산업의 정보·인력·기술·제품·서비스 등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 하여 국가유산산업 특수분류체계를 수립하고 지속적으로 보완·발 전시켜야 한다.

- ② 제1항에 따른 국가유산산업 특수분류체계의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9조(국가유산정보의 제공) ① 국가유산청장은 국가유산청이 관리하는 국가유산 관련 정보를 국가유산산업에 활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유상 또는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. 다만, 다른 법령에서 공개가 금지된 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 - ② 제1항에 따른 국가유산의 정보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10조(연구개발사업의 추진 및 지원) ① 국가유산청장은 국가유산산 업 기술 개발 및 발전을 위하여 공공기관, 대학, 민간단체 및 기업 과 협약을 체결하여 다음 각 호의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 - 1. 국가유산산업 관련 기술 동향 및 수요조사
 - 2. 국가유산산업 관련 기술에 관한 연구개발
 - 3. 개발된 국가유산산업 관련 기술의 평가
 - 4. 국가유산산업 관련 기술의 권리화 및 실용화
 - 5. 기술협력 및 정보교류에 관한 사항
 - 6. 그 밖에 국가유산산업 관련 연구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
 -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국가유산산업 관련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·시행하고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데에 드는 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출연할 수 있다.
 -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 ·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

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- 제11조(연구개발성과의 이전 및 활용 촉진) ① 국가유산청장은 연구개 발사업의 성과가 민간기업에 신속히 이전(移轉)되고 산업화되어 국 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 - ② 국가유산청장은 기술 이전 및 산업화를 촉진하고 연구개발사업의 성과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이 단독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기술 이전 및 산업화 촉진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- 제12조(전담기관의 지정 등) ① 국가유산청장은 국가유산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산업 육성 및 지원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(이하 "전담기관"이라 한다)을 지정할 수 있다.
 - ②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.
 - 1. 제6조에 따른 국가유산산업 관련 통계의 작성
 - 2. 정보체계의 구축 운영
 - 3. 제11조에 따른 연구개발성과의 이전 및 활용 촉진 지원
 - 4. 제13조에 따른 창업 및 유통의 지원
 - 5. 제14조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의 지원
 - 6. 제16조에 따른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
 - 7. 제24조에 따른 국가유산디지털콘텐츠플랫폼의 구축 운영 지원

- 8. 국가유산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제도의 조사 · 연구
- 9. 국가유산산업 활성화를 위한 시장조사 및 경영지원
- 10. 국가유산산업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
- 11. 그 밖에 국가유산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업
- ③ 국가유산청장은 전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.
- 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
- 2.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
- 3. 그 밖에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로 전담기관의 업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렵게 된 경우
- ④ 국가는 전담기관이 제2항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.
- ⑤ 그 밖에 전담기관의 지정·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.

제3장 국가유산산업 육성 및 지원 시책

제13조(창업 및 유통 지원)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산산업에 관한 창업을 촉진하고 국가유산산업의 시설 및 유통 현대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.

- 제14조(전문인력의 양성)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산산업의 유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한다.
 -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소, 대학, 그 밖의 기관을 국가유산 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.
 - ③ 국가유산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국가유산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그 양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 - ④ 국가유산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국가유산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.
 - 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
 - 2. 제5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
 - 3. 전문인력 양성과 관련된 교육과정 또는 내용이 극히 불량한 경우
 - 4.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교육훈련을 하지 아니한 경우
 - ⑤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을 받은 날부터 3년 으로 하고,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계속하여 양성업무를 하려는 자는

-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다시 지정을 받아야 한다.
- ⑥ 제2항에 따른 지정, 제4항에 따른 지정취소·업무정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15조(국가유산의 산업적 활용 기준) 국가유산청장은 국가유산의 산업적 활용에 있어 「국가유산기본법」 제7조의 기본원칙이 준수되고 문화유산의 원형과 무형유산의 전형이 유지되도록 분야별로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.
- 제16조(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산산업 및 국가유산디지털콘텐츠(이하 이 조에서 "국가유산산업등"이라 한다)에 관한 국제적 동향을 파악하고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 - 1. 국가유산산업등 관련 기술과 인력의 국제교류 지원
 - 2. 국가유산산업등 관련 기술의 국제표준화와 국제공동연구개발사업 지원
 - 3. 국가유산산업등 관련 민간부문의 국제협력 지원
 - 4. 국가유산산업등 관련 전시회 등의 개최
 - 5. 국가유산산업등 해외마케팅 및 홍보활동, 외국인의 투자유치
 - 6. 그 밖에 국가유산산업등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
 -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자에게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- 제17조(지식재산의 창출·보호·활용 촉진 및 기반 조성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산산업에 기반을 둔 지식재산의 창출·보호 ·활용 촉진 및 그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 -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산산업 연구개발 또는 산업화 과정에 참여한 사람이 취득한 「지식재산 기본법」 제3조제1호에 따른 지식재산에 관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4장 국가유산디지털콘텐츠의 보급 활성화

- 제18조(국가유산디지털콘텐츠 정책의 추진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는 국가유산디지털콘텐츠의 수집·개발·활용 등 보급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.
 - ② 제1항에 따른 정책을 수립・추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.
 - 1. 모든 국민이 국가유산디지털콘텐츠를 이용·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
 - 2. 지식재산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할 것
 - 3. 개인정보의 보호 및 안전을 확보할 것
 - ③ 국가유산청장은 국가유산디지털콘텐츠 관련 정책을 효과적으로 수립·추진하기 위하여 국민, 대학, 법인 및 단체를 대상으로 국가 유산디지털콘텐츠의 이용수요, 이용현황, 애로사항 등을 조사할 수

있다.

- 제19조(국가유산디지털콘텐츠의 수집) ① 국가유산청장은 국가유산디 지털콘텐츠의 수집을 위하여 국가유산디지털콘텐츠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그 소유·관리 목록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
 - ② 국가유산청장은 이용 활성화의 가치가 높다고 인정되는 국가유산디지털콘텐츠를 그 권리자와의 협의를 통하여 제공받거나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여 구입할 수 있다.
 -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가유산디지털콘텐츠의 수집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20조(국가유산디지털콘텐츠의 개발) ① 국가유산청장은 국가유산디지털콘텐츠의 개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 - 1. 국가유산디지털콘텐츠 관련 기술의 연구 및 기술수준에 관한 조사
 - 2. 국가유산디지털콘텐츠의 제작 및 개발
 - 3. 그 밖에 국가유산디지털콘텐츠의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 - ② 국가유산청장은 국가유산디지털콘텐츠를 제작 또는 개발하는 대학·법인 또는 단체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 -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・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21조(국가유산디지털콘텐츠의 공공정보 이용 촉진) ① 국가유산청장 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유·관리하는 정보 중 「공공기관의 정

보공개에 관한 법률」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를 제외한 정보(이하 "공공정보"라 한다)를 공개하는 때에는 대학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으로 하여금 해당 정보를 국가유산디지털콘텐츠 제작·개발에 이용하도록 할 수 있다. 이 경우 「저작권법」에 따라 이용허락이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이용허락을 받아야 한다.

- ② 국가유산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공정보의 이용 촉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용 조건·방법 등을 정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.
- 제22조(국가유산디지털콘텐츠의 협동 개발·연구 촉진) ① 국가유산청 장은 국가유산디지털콘텐츠의 개발·연구를 위하여 인력, 시설, 기 자재, 자금 및 정보 등의 공동활용을 통한 협동개발과 협동연구를 촉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 -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협동개발과 협동연구를 추진하는 자에 대하여 그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- 제23조(국가유산디지털콘텐츠의 이용 활성화) 국가유산청장은 국가유산디지털콘텐츠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 - 1. 제24조에 따른 국가유산디지털콘텐츠플랫폼의 구축 및 운영
 - 2. 영상 국가유산디지털콘텐츠의 개발 · 보급을 위한 방송채널 운영
 - 3. 국가유산디지털콘텐츠 이용을 위한 공간 조성 및 운영
 - 4. 국가유산디지털콘텐츠 이용 활성화를 위한 포럼 및 세미나 개최

- 5. 그 밖에 국가유산디지털콘텐츠의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
 제24조(국가유산디지털콘텐츠플랫폼의 구축·운영) ① 국가유산청장은
 모든 국민이 국가유산디지털콘텐츠를 자유롭게 이용·활용 및 공유
 할 수 있도록 국가유산디지털콘텐츠플랫폼을 구축·운영할 수 있다.
 - ② 국가유산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국가유산디지털콘텐츠플랫폼의 구축과 운영에 필요한 국가유산디지털콘텐츠의 연계·제공 등의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.
 - ③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국가유산디지털콘텐츠플랫폼의 구축·운영과 이용·활용의 촉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25조(국가유산디지털콘텐츠의 복제 등) ① 국가유산청장은 제24조에 따른 국가유산디지털콘텐츠플랫폼의 국가유산디지털콘텐츠 전부 또는 일부를 복제 또는 간행하여 판매 또는 배포하거나 이용자에게 복제 또는 출력하여 제공할 수 있다. 다만, 다른 법령에서 제공이 금지되거나 「저작권법」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에 대한 이용허락이 없는 국가유산디지털콘텐츠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 - ② 국가유산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산디지털 콘텐츠플랫폼의 국가유산디지털콘텐츠를 복제 또는 출력하여 활용하려는 이용자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.
- 제26조(국가유산디지털콘텐츠 소외계층 지원) 국가유산청장은 경제적 ·지역적·신체적 또는 사회적 여건으로 인하여 국가유산디지털콘 텐츠에 자유롭게 접근하거나 국가유산디지털콘텐츠를 이용하기 어

려운 사회적 약자들이 편리하게 국가유산디지털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제5장 보칙

- 제27조(권한 등의 위임·위탁) ① 이 법에 따른 국가유산청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·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.
 - ② 이 법에 따른 국가유산청장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담기관 또는 관련 기관·법인이나 단체에 위탁 할 수 있다.
- 제28조(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) 제27조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전담기관 또는 관련 기관·법인이나 단체의임직원은 「형법」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법률의 개정)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장의3(제22조의14부터 제22조의24까지)을 삭제한다.